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협동조합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 최혁진의원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0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협동조합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안 제3조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혁진의원·송재봉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8. 18.

다. 회 부 일 : 2025.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은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획재정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실행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 법제와 정책 운영은 부처 간 분산 추진으로 인해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 주체 간 시너지 창출과 정책적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를 단순화하며, 조직 간 협력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창업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등 국가 경제 기반을 이끄는 다양한 정책 경험과 지원 인프라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벤처·혁신 자원과 정책수단을 협동조합 정책과 연계할 경우,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 자금·판로 확대, 경영역량 제고 등에 있어 실질적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3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등).

II. 검토의견

1. 협동조합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안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등 - <u>기획재정부장관</u>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등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소관업무로 규정된 사항을 모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협동조합 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육성 및 창업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협동조합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경제활동 외에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기업 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 기본

법의 제정 취지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협동조합 소관 조정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사업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와 함께 협동조합 총괄업무를 담당할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협동조합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협동조합의 자립강화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 내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농업협동조합법」 등 8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어 그 대상과 사업영역이 제한적이었으나, 현행법이 제정되면서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음.

[기본법 및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구 분	협동조합 종류	주무부처
기본법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가능	기획재정부
개별법 (기본법 적용 제외)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신용협동조합	금융위원회
	농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	해양수산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
	업연초생산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산림조합	산림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협동조합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말 기준 설립된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 20,818개, 사회적협동조합 5,562개로 총 26,380개에 달함. 이 중 일반협동조합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자협동조합이 15,374개로 전체 일반협동조합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소비자, 직원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협동조합의 유형별 현황]

(단위: 개, 2024. 12. 31.기준)

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계
사업자	소비자	직원	다중이해 관계자	소계		
15,374 (73.8%)	615 (3.0%)	713 (3.4%)	4,116 (19.8%)	20,818 (100%)	5,562	26,38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현행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유형이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주무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육성 및 창업지원 정책과 협동조합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및 창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영지원, 판로개척, 자금지원 등 협동조합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외에도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가 아닌 포괄적인 분야에서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둘째, 협동조합 정책과 소상공인 육성 및 창업지원 정책 등과의 연계를 통한 협동조합의 성장은 주무부처 변경이 아닌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도 추진할 수 있으며, 각 부처의 소상공인 및 창업 지원 등 사업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① ~ ③ (생략)	제3조(명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④ ----- ----- ----- ----- ----- ----- -----중 <u>소벤처기업</u> -----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⑤ <u>중소벤처기업</u> ----- ----- ----- ----- ----- ----- ----- -----.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경영 지원) <u>중소벤처기업</u> ----- ----- ----- ----- ----- -----.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u>중소벤처기업</u> ----- ----- ----- -----.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u>중소벤처기업</u> -----

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와의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

④ 중소벤처기업-----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벤처기업-----

-----.

⑦ 중소벤처기업

⑧ _____

_____ 중소벤처기

업 _____.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략)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생략)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 ④ (생략)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생략)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 ⑥ (생략)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

1. (현행과 같음)

2. -----중소벤처기업-----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

③ 중소벤처기업-----.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 3. (생략)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흡수합병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⑩ · ⑪ (생략)

제57조(해산) ① (생략)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⑦ -----
중소벤처기업-----

1. ~ 3. (현행과 같음)

⑧ 중소벤처기업-----

⑨ 중소벤처기업-----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57조(해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소벤처기업-----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

-----중소벤처기업-----

② 중소벤처기업-----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 ⑤ (생략)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
 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
 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생략)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

④ · ⑤ (현재와 같음)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중소벤처기업-----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준용규정)

-----중-----
소벤처기업-----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⑥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

-----.

④ 중소벤처기업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벤처기업-----

-----.

제83조(준용규정) -----

-----중소벤처기업-----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

-----중소벤처기업-----

② (생 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제86조(정관) ① · ② (생 략)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

-----.

1. ~ 3.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

-----.

⑤ 중소벤처기업-----

-----.

⑥ (현행과 같음)

제86조(정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중소벤처기업-----
-----.

④ 중소벤처기업-----

-----.

⑤ 중소벤처기업-----

-----.

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
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
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
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
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야 한다.

④ (생 략)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생 략)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
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

-----.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소벤처기
업-----.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
-----중소벤처기업-----

-----.

1. ~ 4.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
업-----

-----.

③ 중소벤처기업-----

-----.
-----.

④ (현행과 같음)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소벤처기업-----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조합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 5. (생략)

⑧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⑩ · ⑪ (생략)

제102조(해산) ① (생략)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청산인) ① ~ ④ (생략)

⑤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 ⑥ (생략)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중소벤처기업

1. ~ 5. (현행과 같음)

⑧ 중소벤처기업

⑨ 중소벤처기업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102조(해산)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중

소벤처기업 _____

_____ 중소벤처기업 _____

_____ .

제103조(청산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
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_____ 중
소배처기업 _____

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
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
가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이 제9항에서 정
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
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
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
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8조(해산등기) ① ~ ③ (생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
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
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
다.

-----.

⑧ 중소벤처기업-----

-----.

1. 2. (현행과 같음)

3. -----중소벤처기업-----

⑨ 중소벤처기업-----

-----.

⑩ 중소벤처기업-----

-----.

제108조(해산등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

-----.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
-----중소벤처기업-----

-----.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생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

제111조(감독) ① 중소벤처기업-----

-----.

② 중소벤처기업-----

-----.

1. ~ 3.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

-----.

⑥ 중소벤처기업-----

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

-----.

-----.

1. ~ 5.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

-----.

제113조(청문) 중소벤처기업-----

-----.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

-----중소벤처기업-----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

-----중소벤처기업-----
-----.

② · ③ (생략)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5조의12(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

1. ~ 5.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

제115조의12(청문) 중소벤처기업----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중소벤처기업-----

② -----중소벤처기업-----

③ 중소벤처기업-----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19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기획재정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 ----- ----- ----- -----. 제11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중소벤처기업</u>----- -----.
---	--

문 의 처
02)6788-5151